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긴급복지 지원 사유에 부(副)소득자의 소득 상실 등 추가〉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06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긴급복지 지원 사유에 부(副)소득자의 소득 상실 등 추가	3

I. 개요

1.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0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8.

(3) 회 부 일 : 2024. 7.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넓히
고자 합니다.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은 가구의 위기를 주소득자의 상황에 따라 판
단합니다.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을 위기상
황으로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역시 가구구성원이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를 위기상황으로 봅니다.

각 가구의 사정에 따라 부소득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소득을 상실
해도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도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합
니다.

이에 주소득자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과 함께 주소득
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지면 긴급
복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이 위

기상황에 처한 가구구성원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조제1호 및 제8호).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긴급복지 지원 사유에 부(副)소득자의 소득 상실 등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긴급복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의 사유로, ① 부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조 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 ----- -----.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1. 주소득자(主所得者)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 -----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6. 주소득자 또는 <u>부소득자(副所得者)</u>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6. ----- <u>부소득자</u> ----- ----- ----- -----
7. (생략) <u><신설></u>	7. (현행과 같음)
8.·9. (생략)	8.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u>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u> 9.·10.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나. 검토의견

□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긴급복지의 지원사유가 되는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현행 법 제2조 및 제2조의 위임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부상을 당한 경우 등 소득 상실 또는 가정폭력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고시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유(단전, 실직,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등)를 규정하고 있음.

< 긴급복지지원법 상 위기사유 규정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2023.3.22. 일부개정)」

1.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2.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3.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 다.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4.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 라.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5.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나. 구급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6.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나.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7. 삭제

8.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9.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10.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가. 자살의도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를 말함
1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12.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13.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2023년 기준 긴급복지 지원 지원 건수는 총 518,507건, 지원 인원은 총 693,281명인데, 각 사유별 구체적인 현황을 보면 예컨대 제1호 사유(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의 경우 12,942명(1.9%)이며, 고시에 의한 지원 인원은 194,914명(28%)임.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 사유에 따른 지원 현황 >

구분	지원건수(건)	지원인원(명)
총계	518,507	693,281
제1호 (주소득자 사망, 가출 등)	7,326	12,942
제2호 (질병, 부상)	75,312	78,156
제3호 (방임·유기·학대)	459	722
제4호 (가정폭력·성폭력)	3,037	5,535
제5호 (화재, 자연재해 등)	2,727	4,174
제6호 (휴, 폐업 등)	13,162	21,779
제7호 (실직)	60,126	92,997
제8호 (조례)	208,756	278,336
제9호 (고시)	144,906	194,914
기타	2,696	3,726

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개정안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①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제1호)와 ②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제8호 신설)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임.

- 참고로 주소득자는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많은 사람, 부소득자는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을 의미함.

<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 의미 >

주소득자 (住所所得者)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많은 사람
부소득자 (副所得者)	-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 - 부소득자의 소득 상실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보건복지부 「2023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23p

- (개정안 제2조제1호) 주소득자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소득 상실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가구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도 지원사유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제2조제6호 및 제7호¹⁾에서는 이미 부소득자를 위기사유에 추가하고 있음.

1)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 특성별 맞벌이’ 가구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유배우 가구(1,268만 7천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48.2%,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409만 5천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6.8%이며, 그 비중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주소득자뿐만 아니라 부소득자도 가계 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부소득자의 소득상실 등으로 인한 위기발생에 대해서도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2022년 가구 특성별 맞벌이 가구 현황 >

	전체 가구	맞벌이 가구	전년대비 증가율
유배우 가구	1,268만 7천 가구	611만 5천 가구 (48.2%)	2.1%p 상승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	409만 5천 가구	232만 6천 가구 (56.8%)	3.5%p 상승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청 보도자료²⁾ 재구성)

- 또한, 맞벌이 가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관계 부처(보건복지부)에서는 실무적으로 주소득자와 부소득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주소득자와 부소득자를 병렬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한편, 긴급복지제도는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후조사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및 재산기준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부소득자의 소득상실을 위기사유로 추가하더라도 일정부분 사후적인 관리는 가능하다고 보여짐.

2)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통계청 보도자료(2024.6.18.)

□ (개정안 제2조제8호) 개정안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를 위기사유에 추가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달리 현재보다 지원대상이 오히려 축소될 여지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³⁾에서 위기상황으로 정하고 있는 ‘이혼’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나 현행 고시에서는 ‘이혼한 때’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소득자와의 이혼으로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등 현행 고시로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입법 취지와 현행 고시에 따른 운영사례 등을 고려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라는 제한적 표현을 사용하는 법 문언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0호)

1.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이하 생략)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일부 수용) ‘부소득자’ 추가(안 제2조제1호)의 경우, 주소득자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소득 상실로 인해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소득자를 추가하여 지원대상 확대 필요가 있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다른 위기사유에서도 이미 부소득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용할 수 있음.

‘이혼’ 위기사유 신설(안 제2조제8호)의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 이혼’을 법률에 신설하여 지원 대상 확대하려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나, 입법 취지와 달리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가 추가되어 현행 고시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보다 위기사유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7

